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2. 20(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6. 3. 29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06. 3. 30(목) 제12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6. 3. 29)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자치행정과장)

- 가. 제안이유
 -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상·하수도 및 분뇨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·반영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- 분뇨처리 및 상·하수도 관련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로 이관(안 제3조 제2항 제6호 바목 및 제9호 마목)
 -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신설(안 제4장 제11조 내지 제13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- 가.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1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받은 상하수도 사업소를 평창읍 하리 210-2번지에 새로이 설치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

나. 주요내용을 보면

-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존 환경 복지과에 분장되어 있는 분뇨처리 사무와, 지역도시과에 분장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련사무를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

다. 검토의견

-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

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15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2. 29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상·하수도 및 분뇨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·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분뇨처리 및 상·하수도 관련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로 이관(안 제3조제2항제6호바목 및 제9호마목)
- 상·하수도 및 분뇨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신설(안 제4장제11조 내지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다. 관계부서승인 :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(2006.01.25)

라. 입법예고 : 2006.01.26-02.14(20일간), 제출의견 없음.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6호바목을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제9호마목을 삭제하고, 바목내지 아목을 마목내지 사목으로 한다.

제4장(제11조 내지 제13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사업소

제11조(설치)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·하수도, 분뇨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(이하 “사업소”)를 설치한다.

②사업소의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-2번지에 둔다.

제12조(소장)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3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상·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·시행
2. 상·하수도시설,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
3. 상·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

4. 상·하수도 사용료 부과·징수
5.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
6. 상·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
7. 기타 상·하수도, 분뇨처리와 관련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(생략)	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(현행과 같음)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1.~5.(생략)	1.~5.(현행과 같음)
6. 환경복지과	6.(현행과 같음)
가.~마.(생략)	가.~마.(현행과 같음)
<u>바.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</u>	<u>바. <삭제></u>
7.~8.(생략)	7.~8.(현행과 같음)
9. 지역도시과	9.(현행과 같음)
가.~라.(생략)	가.~라.(현행과 같음)
<u>마. 상하수도 관련 업무</u>	<u>마. <삭제></u>
<u>바.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</u>	<u>마.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</u>
<u>사. 경관관리 관련 업무</u>	<u>바. 경관관리 관련 업무</u>
<u>아. 대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 관련 업무</u>	<u>사. 대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 관련 업무</u>
10.(생략)	10.(현행과 같음)
가.~라.(생략)	가.~라.(현행과 같음)
제3조의2(여유기구)(생략)	제3조의2(여유기구)(현행과 같음)
제3장(제1절 내지 제2절) (생략)	제3장(제1절 내지 제2절)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제4장 사업소</u>

현행	개정안
<신설>	<p>제11조(설치)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·하수도, 분뇨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(이하 “사업소”)를 설치한다.</p> <p>②사업소의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-2번지에 둔다.</p>
<신설>	<p>제12조(소장)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
<신설>	<p>제13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·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·시행 2. 상·하수도시설,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3. 상·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 4. 상·하수도 사용료 부과·징수 5.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 6. 상·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7. 기타 상·하수도, 분뇨처리와 관련된 사항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02조 (행정기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,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1994.3.16, 1994.12.20, 2005.3.24>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·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개정 1994.3.16>

②~⑤ (생략)

제105조 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<개정 1994.3.16>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

제10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 및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(“이하생략”) <개정 1998.8.31>

② ~ ③ (생략)

④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 및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1998.8.31>

⑤ (생략)

⑥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 및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8.31>

제12조의3 (사업소 및 출장소) ①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,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. <신설 2003.4.4>

③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,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시·도는 상수도·도시철도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할구역안의 지역사업소에 대한 원활한 지휘·감독과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1998.8.31>

⑤사업본부·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. 다만, 출장소중 경제자유구역청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)의 장과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1998.8.31, 2003.12.30, 2005.2.11>

[별표 6] <개정 2005·2·11, 2005.10.20>

사업본부·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

(제12조의3제4항관련)

구 분		장의 직급	차장	부장	과장 또는 담당관
특별시	(생략)				
광역시·도	(생략)				
시·군·자치구	인구15만이상	4급 내지 6급			5급
	인구15만미만	5급 또는 6급			

- 비고 1.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.
 2.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장 및 그 보조·보좌기관은 위 표의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, 일반직공무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수한 직위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 3. ~ 4. (생략)
 5.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표의 보조·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급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 6. (생략)